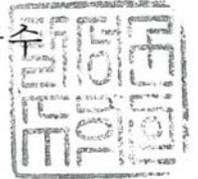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

제출일자 : 2015.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하던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자녀의 입영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허가하던 1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10일 이내,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2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 미사용시 30일 이내)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3조제14항)
- 나. 자녀의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 할 경우 1일의 휴가 부여 규정 신설(안 제24조제16항)
- 다.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3일에서 1일로 개정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제23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하며, “1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14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
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제23조제1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기재직휴가는 1회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제15항 중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11.12.30)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복무선서) ① (생략) ② 제1항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u>의한다.</u></p>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법 <u>기타</u>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u>기타</u>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 5. (생략)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u>기타</u>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 10. (생략) <p>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u>의한</u>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u>의한</u>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조(복무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u>따른다.</u></p> <p>제22조(공가)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그 밖에</u> ----- <u>따른</u> ----- ----- 2. ----- <u>그 밖에</u> ----- 3. <u>법률에 따라</u> ----- 4. ~ 5. (현행과 같음) 6. ----- <u>제29조</u> <u>조에 따른</u> ----- 7. -----, <u>그 밖에</u> ----- ----- 8. ~ 10. (현행과 같음) <p>제23조(특별휴가) ① ----- ----- ----- <u>따른</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따른</u> ----- ----- -----.</p>

현행	개정안
<p>⑥ ~ ⑩ (생략)</p> <p>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⑫ ~ ⑬ (생략)</p> <p>⑭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신설></p> <p><신설></p> <p>1. ~ 3. (생략)</p> <p>4. 장기재직휴가는 2차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p> <p><신설></p> <p>⑮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신설></p>	<p>⑥ ~ ⑩ (현행과 같음)</p> <p>⑪ ----- ----- ----- 따른 ----- ----- -----.</p> <p>⑫ ~ ⑬ (현행과 같음)</p> <p>⑭ ----- 10년 이상 ----- ----- 장기재 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p> <p>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p> <p>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p> <p>3. ~ 5. (현행 제1호, 제2호, 제3호와 각각 같음)</p> <p><삭제></p> <p>6. 장기재직휴가는 1회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p> <p>⑮ 법 제66조에 따른 ----- ----- ----- ----- -----.</p> <p>⑯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p>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전문개정 2010.7.15.]